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1

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 박대출・황보승희・김영식

정찬민 · 정희용 · 김석기

조명희 · 김상훈 · 박성중

허은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.

국가인권위원회 권고(2019)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「범죄수사규칙」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.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체포 및 구속·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부모의 체포 및 구속·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39조 및 안 제40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.
- 1. 자녀의 존재 사전 확인
- 2. 수갑을 채우는 등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
- 3. 부모가 자녀에게 상황을 직접 설명할 환경 조성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인과정에서 제39조제3항 각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구인) ①・② (생 략)	제39조(구인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 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
	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보호
	관찰 대상자 자녀의 인권을 보
	호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
	<u>갖춰야 한다.</u>
	<u>1. 자녀의 존재 사전 확인</u>
	2. 수갑을 채우는 등 부모의 체
	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
	않도록 공간 분리
	3. 부모가 자녀에게 상황을 직
	접 설명할 환경 조성
제40조(긴급구인) ① ~ ③ (생	제40조(긴급구인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
	따른 구인과정에서 제39조제3
	항 각 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
	<u>다.</u>